

## 위임전결 규정

(제9차 개정 2009. 11.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사무국 사무처리의 신속화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위임 전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범위) ① 각 직위의 위임전결은 사후관리 보고로써 종결되며, 그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예외에 속하는 사항은 그 의견을 구신(口詢)하여 상위 직위의 결재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한다.

제3조(협조) 위임전결 사항 중 타 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협조 하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4조(보고) 이 규정에 의거,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총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특수연맹의 준용) 지방·특수연맹은 다음에 의거,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9. 11. 13.)

1. 각 팀장의 전결사항은 지방사무처장이 전결한다. (개정 99. 12. 17.)

다만, 지방사무처장은 금전의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30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99. 6. 22.)

2. 사무총장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은 연맹장이 결재한다. (개정 97. 12. 16.)

다만, 금전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06. 12. 12.)

## 부 칙

1.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